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우리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4조)

다.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라.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7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 28. ~ 2022. 2. 17.)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미래지역활력과-383(2022. 1. 20.)]

3)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3331(2022. 1. 19.)]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별첨 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5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관광기념품 지정) ①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주군(이하 “군” 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 등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16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

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2조(판촉활동 등) ①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촉활동 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
3. 제20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분야

	분 야	내 용
1	전통기념품	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성주군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	현대기념품	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2. “성주군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 성주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 성주군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현대적 디자인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

❍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문구, 잡화,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 상품

※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 양산 가능한 제품

❍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취소 대상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상징, 문장(紋章), 캐릭터 등의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4.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성주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심사항목	배 점		평 가 사 항
상 징 성	20	20	▷ 성주군의 상징, 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 성주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	50	15	대중성(상품화, 판매 가능성)
		15	가격 적정성
		20	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	10	10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	10	10	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	10	10	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	100		

[별표 2]

판촉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
(제22조 제3항 관련)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관광 업무 등 군 전반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국내외빈
3. 방송매체 홍보지원
4. 관광 팸투어 초청 행사,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행사 참가자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한글			
	영문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휴대전화		집전화	
	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 체 명	한글 :	영문 :	
주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Tel :	FAX :	http://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종사원수 :	설립연도 :

2. 신청제품

신청 분야	□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 품 구 분	□ 민·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	(작품명 :) : (가로 × 세로 × 높이)cm		
월 생산가능량		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제 작 원 가	낱개가격 원	세트가격	원
판 매 가 격 (부가세포함)	낱개가격 원	세트가격	원
시중유사제품 판 매 가 격 (부가세포함)	1. 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 제품 생산현황 -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판매 실적 -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수번호</td><td>접수일</td><td>발급일</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상 호</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 colspan="4">사업자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주 소</td></tr>
<tr><td colspan="4">영업소 위치</td></tr>
<tr><td colspan="5">「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3">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성주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규정에 따라 성주군(이하“군”라 한다)과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 성주군수가 지정한 판매점(이하“판매점”이라 한다)는 성주군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지정 등의 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계약 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8조(지정 등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와 판매점이 위반 한 경우
3. 기타 군이 업체와 판매점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은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기념품 지정을 받은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군은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판촉용 관광기념품 구입

※ 단, 군-업체간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군 공식사이트, 홍보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

제5조(의무) ① 업체는 군이 지정한 『 』등 기념품을 판매점에 공급하고 판매점은 이를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기념품을 판매점이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업체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④ 업체는 기념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⑥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⑧ 판매점은 군이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기념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대금은 기념품 납품 시 판매점이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판매점은 업체로부터 납품된 기념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기념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은 본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군과 업체, 판매점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군이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주군 : 성 주 군 수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 제4호서식]

판촉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예시)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일 자	사 용 용 도	기념품 현황			수 령 자	결 재		
		구매	지급	잔량		담 당 주무관	팀 장	과 장

참고 **관계 법령 발췌**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별첨 1]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김 현 희